

# 서울특별시 서울재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제353호
- 다. 제출일자: 2022. 10. 17.
- 라. 회부일자: 2022. 10. 21.

### 2. 제 안 사 유

- 서울재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산업 및 재사용 등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재사용·재활용 문화확산을 위한 거점시설로서,
- 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일부 업무의 변경에 따라 신규위탁의 형태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 내용

#### 가. 위탁사무명: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 나. 민간위탁 필요성 및 추진 근거

- 새활용 분야의 창조적 인재양성과 산업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사용·재활용 문화 확산의 거점시설로 운영 중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사이클링 등 재활용분야 전문지식과 인력, 기술 등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 다. 위탁사무 내용

- 새활용 산업육성, 새활용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새활용,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 민간제로마켓 활성화(신규)

#### 라. 시설 개요

- 시설명: 서울새활용플라자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용답동 250-1)
- 부지면적: 16,678 $m^2$
- 주요시설: 소재은행, 꿈꾸는 공장, 재사용작업장, 입주기업공간 등

- 준공일자: 2017.9.
- 이용대상: 일반시민
- 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



**마. 위탁기간: 3년('23. 1. 1. ~ '25. 12. 3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7.1.1.~'19.12.31. (3년, (재)서울디자인재단)
- 2차 : '20.1.1.~'22.12.31. (3년, (재)서울디자인재단)

**바.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2. 10. 6.)

**사. 소요예산(비정산비 기준): 4,756,953천원**

(2023년 예산, 3년간 동일)

**아.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운영·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민간 운영을 통해 주민이용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기대

##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리·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22.12.31.)와 일부 사무의 이관 및 추가로 인한 신규위탁(공개모집)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sup>1)</sup>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6년 12월부터 (재)서울디자인재단에서 위탁 운영해왔으나, 일부 사무의 이관 및 추가로 인해 2023년부터 신규 위탁의 형태로 추진할 예정임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변경 계획>

이관 사무(창업정책과)	신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입주기업 지원 사무<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입주기업 모집·선발·관리</li><li>· 입주기업 지원 (컨설팅, 기업홍보, 유통판로·사업화 지원 등)</li><li>· 입주기업 개별공간, 공용공간 관리</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 사무<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목표: 제로웨이스트 매장 1,000개 조성</li><li>· 운영 지원(마케팅 교육, 공동구매 등)</li><li>·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li><li>· 현장 점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li></ul></li></ul>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검토 의견

###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제14조2)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2)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리·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 명,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본 동의안에는 제4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 근거가 빠져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b>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b>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u>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u>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은 2022년 9월 민간위탁 신규 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sup>3)</sup>으로 심의하였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신규(공모)사업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다만, 신규 위탁 개시일이 2023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동의·

3)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원순환과)(조직담당관-27419, '22.10.10.)

의결과 일상감사 의뢰, 재위탁 공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12월 중에 모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sup>4)</sup>하고 있지만, 12월 15일로 예정된 시의회 의결 일정을 고려한다면 12월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임.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 신규위탁 추진에 문제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현 상황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향후 민간위탁 공모 및 수탁자 선정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임.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예산지원형/신규(공모)	3년	적정(권고)	타 민간위탁 사무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인건비, 이윤 등 조정 필요

#### □ 민간위탁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요약<sup>5)</sup>

- **운영성과:** 개관 이후 연매출액은 '21년 12월 기준 약 136억원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대면모임 및 오프라인 활동의 제약 속에서도 선제적인 사업 계획 변경 및 온라인 대응이 효과적이었음.

※ 누적방문인원 약 39만명, 교육프로그램 참여 4.7만명으로 새활용 문화 및 자원순환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

4)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계획(자원순환과-2733-, '22.9.29)

5)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서울특별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22.6.)



- **개선과제:**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성과 확인 및 기업지원 사업의 전략적 효과 증대를 위해 연도별 목표값의 제시가 필요하고, 만족도 혹은 인식 개선도 등 정량적 성과지표의 활용이 요구되며, 판로 확대와 재활용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

아울러, 재활용플라자의 정량목표 KPI(핵심수행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에 재활용기업의 매출액과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을 포함하고, 온·오프라인 방문객과 잠재고객인 ESG협력기업 및 재활용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 종합 의견(결론)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에 제출된 점과 동의안 제출 시기가 늦은 점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일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체평가 시 정량적 성과지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확대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규 위탁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붙임 1] 2022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예산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	입주기업 지원	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계	4,661,880	432,168	4,229,712
인건비	1,042,000	114,508	927,492
운영비	2,395,000	7,660	2,387,340
사업비	1,204,000	310,000 (국비 80,000)	894,000
수수료	20,880	-	20,880

※ 수수료: 사업비의 2%

※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2023. 1. 1.자로 창업정책과로 이관

### [붙임 2] 2023년~2025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예산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4,756,953	4,756,953	4,756,953
인건비	1,078,183	1,078,183	1,078,183
운영비	2,057,572	2,057,572	2,057,572
사업비	927,485 (민간제로마켓 지원 6억 포함)	927,485 (민간제로마켓 지원 6억 포함)	927,485 (민간제로마켓 지원 6억 포함)
수수료	391,953	391,953	391,953

※ 수수료: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산정  
- 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일반관리비: 총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포함)의 2%

▶ 이윤: 일반관리비의 6%

▶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이윤)의 10%

※ 2024년 이후 예산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소요예산 재산정 후 편성예정

### [붙임 3] 2023년 입주기업 지원예산 편성내역(창업정책과)

(단위: 천원)

사업명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계	180,000	113,519	549,079	842,598
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180,000	113,519	389,079	682,598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	-	160,000 (국비 80,000)	160,000 (국비 80,000)

※ 사무관리비로 편성